

창원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재나100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준재심원고 채무자 E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AH

피고(준재심피고) F

준재심대상결정 창원지방법원 2019나59148 의 2020. 4. 28.자 화해권고결정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1.

재심대상결정 창원지방법원 2019나59148 사건의 2020. 4. 28.자 화해권고결정

주 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준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E와 피고(준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6. 10.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 E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 12. 접수 제62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준재심청구취지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가. 원고들은 2018.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2179호로 D와 E를 상대로는 대여금 지급을, 피고를 상대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3.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9나59148호(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항소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4. 28. “원고들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30,000,000원은 피고가 2019. 10.경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55,000,000원은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면, 원고 A은 피고에게 진주시 A아파트 AJ호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준재심대상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은 2020.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85,000,000원은 D와 E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70,000,000원의 원리금으로서, 피고는 D와 E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20. 7. 8.까지 원고에게 합계 90,495,8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E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채권부존재확인서를 2021. 7. 14.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한편, E는 2018. 5. 11. 창원지방법원 2018하단68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8. 6. 19. 파산선고를 받았고, 준재심원고는 같은 날 E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준재심원고는 2020. 7. 10. 자신이 원고들의 소송수계인임을 주장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과 함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계속되던 중 E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소송은 소송절차의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준재심 사유가 존재하고, 준재심원고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채권자인 원고들을 수계할 권한이 있다.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적법하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D와 피고 사이에 2016. 10. 8.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E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

준재심대상사건의 계속 당시 이미 채무자 E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으므로 준재심대상사건 중 채무자 E의 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 부분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있다.

한편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채무자(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아닌 보증인 등 제3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20. 7. 8. 피고로부터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제기 당시 이미 채무자 E에 대한 파산채권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제기 당시 채무자 E의 파산관재인인 준재심원고는 채무자 E에 대한 파산채권자가 아닌 원고들의 소송수계인이 될 수 없었으므로, 준재심원고는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제기된 소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양상익, 판사 전보경, 판사 김희수